



제437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법제사법위원회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로 단축〉
■ 이해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1122호)

2026. 7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세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해식의원 등 14명
2. 제 안 일 : 2025. 6. 27.
3. 회 부 일 : 2025. 6. 3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「유실물법」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,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.

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%에 불과한 실정임. 특히 「유실물법」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,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.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53조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기간을 습득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하려는 것임(안 제253조).

현 행	개 정 안
第253條(遺失物の 所有權取得) 遺失物 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6개월 내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拾得者가 그 所 有權을 取得한다.	第253條(遺失物の 所有權取得) ----- ----- ---3개월--- ----- -----.
부칙	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
제2조(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)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습득공고를 하는 유실물부터 적용한다.	

현행법 제253조는 유실물의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공고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「유실물법」 제1조제2항¹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²⁾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

-
- 1) 「유실물법」 제1조(습득물의 조치)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,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(이하 “자치경찰단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,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- 2) 「유실물법 시행령」 제3조(습득공고 등)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

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고,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 공고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.

아울러 해당 기간 유실물의 보관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은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고, 유실물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에게 추후 보관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.³⁾

그런데, 최근 3년간 유실물 접수 및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, 접수건수가 2022년 111만여건에서 2024년 130만여건으로 증가함에 따라, 반환건수 역시 2022년 72만여건에서 2024년 75만여건으로 증가하였지만 유실물 반환 비율은 2022년 65%에서 2024년 58%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⁴⁾

까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,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(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
 2. 습득물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
 - ② (생략)
 -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3) 「유실물법」 제2조(보관방법)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.
-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.
 -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.
- 제3조(비용 부담) 습득물의 보관비, 공고비(公告費),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(引渡)받는 자가 부담하되, 「민법」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4) 2025년(조회일: 2026. 1. 26. 기준) 유실물 접수건수는 1,329,341건, 반환건수는 698,975건(53%)으로, 2025년 유실물에 대한 반환절차는 2026년까지 습득공고(6개월) 기간을 거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.

< 최근 3년간 유실물 접수 및 반환 건수 >

구분	총 접수 건수(A)	유실자 반환 건수(B)
2022년	1,111,178	723,701 (65%)
2023년	1,229,854	744,765 (61%)
2024년	1,304,392	753,565 (58%)

주: 자료 조회일 2025. 11. 24.

자료: 경찰청

한편, 반환된 유실물의 반환 기간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유실물이 원 소유주에게 90일 이내에 반환된 비율이 92%, 180일 이내에 반환된 비율이 98%에 달하고 있는바, 이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⁵⁾(2011. 12.~)등 유실물 검색·확인이 수월해진 것이 주요 원인⁶⁾으로 추측됨.

< 최근 3년간 유실물 반환 기간 (누적) >

구분	2024년		2023년		2022년	
7일내 반환	540,107	72%	562,007	75%	545,019	75%
14일내 반환	581,397	77%	596,998	80%	579,975	80%
21일내 반환	604,895	80%	616,998	83%	598,981	83%
28일내 반환	620,376	82%	631,313	85%	611,463	84%
60일내 반환	657,974	87%	660,812	89%	643,272	89%
90일내 반환	695,421	92%	696,062	93%	678,663	94%
120일내 반환	713,108	95%	710,318	95%	690,958	95%
150일내 반환	725,330	96%	718,446	96%	697,435	96%
180일내 반환	740,181	98%	729,301	98%	707,623	98%
180일 후 반환*	753,565	100%	744,765	100%	723,701	100%
평균 반환일	17.2일		14.3일		13.9일	

주1. 180일 이후 반환은 분실자가 법정기간 경과 전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후 180일이 지나 방문한 경우 및 분실자의 우편반송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간이 증가한 경우임.

2. 자료 조회일 2025. 11. 24.

자료: 경찰청

5) 2025년 12월부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(LOST112, <https://www.lost112.go.kr>)은 경찰민원24(<https://minwon24.police.go.kr>) 홈페이지에 통합되어 운영중임.

6)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분실물 신고, 습득물 검색(사진, 습득 장소, 습득일자, 보관 장소, 분실자명(확인가능시) 등 확인 가능

따라서, 대부분의 유실물이 90일 이내에 반환(유실물의 90% 이상)된다는 점,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고·보관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다만, 1958년 「민법」 제정 이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기간이 2013년 4월 5일자 개정에 따라 6개월로 단축되었는데,⁷⁾ 12년이 경과한 현재 해당 기간을 보다 단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⁸⁾

참고로, 반환된 유실물 중 90일 이내에 반환된 유실물의 비율은 2012년 86%에서 2016년 95%로 상승하였으나, 2022년 94%, 2024년 92%로 감소하였음. 같은 기간 동안 유실물이 180일 이내에 반환되는 비율은 2012년 90%에서 2024년 98%로 증가하였음.

7) 「민법」 [법률 제11728호, 2013. 4. 5, 일부개정]

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 <개정 2013.4.5.>

「민법」 [법률 제471호, 1958. 2. 22, 제정]

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
8)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902666)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·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졌고,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. 이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(안 제253조).
--

< 연도별 90일/180일 내 유실물 반환 비율 >

구분	90일내 반환		180일내 반환		유실물 총계
2012	163,908	86%	171,722	90%	191,766
2013	332,487	90%	345,325	94%	368,095
2014	346,755	93%	358,094	96%	372,082
2015	342,724	93%	355,200	97%	367,962
2016	527,120	95%	540,409	98%	553,592
2017	504,862	95%	517,504	97%	531,418
2018	535,307	95%	547,680	97%	566,161
2019	603,501	95%	619,065	98%	632,808
2020	532,086	95%	543,348	97%	557,798
2021	499,567	95%	508,987	97%	526,128
2022	678,663	94%	707,623	98%	723,701
2023	696,062	94%	729,301	98%	744,765
2024	695,421	92%	740,181	98%	753,565

주 1.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(LOST112)은 2011년 구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및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, 유의미한 통계는 2012년부터 집계됨.

2. 자료 조회일 2025. 11. 24.

자료: 경찰청

문 의 처

02)6788-5054